의 안 번 호	제9호
의결 연월일	2019. 2. 21.

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2월 13일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19년 2월 13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19년 2월 21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공공시설사업소장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별 운영요금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, 시설요금의 현실화 등 항목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운영요원 확보 등급별 자격기준을 2급으로 정비함. (안 제9조)

○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중 경로식당 사용료 변경(인상)
(안 제16조 별표1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지 : 생 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